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유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59
----------	-------

발의년월일 : 2021. 1. 15.

발 의 자 : 유재수 의원 등 16명

1. 제정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지원의 범위(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안 제6조)
- 인권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5. 예산수반사항 : 별첨(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별첨(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이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
3.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시 의 원	유재수의원 대표발의 (행정3572)
안		
자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559
----------	-------

제안년월일 : 2021년 1월 28일
제안자 : 도시환경위원장

수정이유

- 경비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수정함.

주요골자

- 경비원의 정의에서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안 제2조제2호)
-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로 수정하고,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분리 수정.(안 제7조제1항~제2항)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업무 및 관리 업무” 를 “업무” 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보장을” 을 “보호를” 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를 “보호를 위한 교육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p> <p>3. ~ 5. (생략)</p> <p>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조(정의) ----- -----.</p> <p>1. (원안과 같음)</p> <p>2. ----- ----- <u>업무</u> ----- -----.</p> <p>3. ~ 5. (원안과 같음)</p> <p>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 ----- ----- <u>보호를</u> ----- -----.</p> <p>②·③ (원안과 같음)</p> <p>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 ----- ----- ----- <u>보호를 위한 교육이</u> ----- -----.</p> <p>②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p>

<신 설>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